# 소통하는 의정

#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진설

###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21년 1월 11일

나. 회부일자 : 2021년 1월 12일

#### 3. 제안이유

사회재난 피해수습과 피해주민 생활안정을 위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과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4. 주요내용

가. 장례비·치료비 지원항목 및 기준 추가(안 제5조)

나.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한 지원금액 등의 구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

다. 구상에 따른 책임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6조의2)

라. 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에 관한 사항 신설(안 부칙 제2조)

#### 5. 검토내용

가. 조례개정의 필요성

○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재난에 대해 효율적으로 피해를 수습하고 피해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회재난 원인제공자에 대해 시・군이 부담한 지원 금액을 구상하기 위한 근거조항 마련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

#### 나.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

- 안 제1조(목적)에서는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 니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제66조제4항 을 근거법령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2조제2호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같은 법과 같은 명칭을 사용하기 위해 피해주 민으로 변경하였음.
- 같은 법 제66조제3항제9호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결정에 따라 피해주민의 장례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던 사항을 안 제5조(지원기준 등)를 통하여 피해주민의 장례비와 치료비 지원 및 지원기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음.
- 같은 법 제66조제6항에서는 사회재난의 원인제공자에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6조(지원금액 등의 구상)는 사회재난 에 대하여 그 원인제공자에게 시·군에서 부담한 지원비용의 전부 를 청구 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의 구상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

였으며, 시·군의 과다 구상 청구에 대하여 원인제공자가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안 제6조의2에서 구상에 따른 책임을 규정하였음.

-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
- 입법예고('20. 12. 4.~'20. 12. 24.)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

#### 다.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

○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

#### 6. 검토의견

○ 「충청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해 실질적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 및 치료비 지원을 명문화하고, 사회재난 을 유발한 원인제공자에 대해 시·군이 지원한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구상권 행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사회 재난의 효율적인 피해수습과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 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됨.